

퇴직연금 제도일반

적용대상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IRP, 개인IRP)

회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 ·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내부에 퇴직금재원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은 경우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재원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별도 적립, 관리하므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노후생활 재원마련

- ·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지만 근로자들의 노후대책은 미미하여 소득없는 노후생활기간이 점점 길어짐
 - * 2020년 평균수명 82세 예상, 55세 은퇴시 소득없는 생활기간 약 27년 예상
 - * 짧아지는 근속년수로 인해 기존 퇴직금제도의 핵심역할인 노후보장 기능이 점차 축소됨
- ·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을 옮기더라도 계속 적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 여를 연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어 노후보장 재원으로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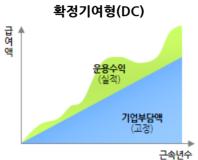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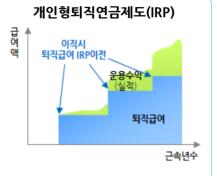
2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특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로 구성됩니다.







토리금이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자산은 사용자(기업) 가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금제도 와 동일한 퇴직금을 수령함.

※퇴직급여 수준은 퇴직금제도와 동일

토 직금이 근로지별 퇴직연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기업은 매년 기입자의 퇴직금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며 퇴직연금 지산은 근로자(기입자)가 직접 운용함.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을 노후자금마련을 위해 통산 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

※기업IRP: 10인 미만 기업이 근로자의 IRP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도입으로 인정.

퇴직연금제도는 제도 종류별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항거그어쉬(DD)	하지기어처(DC)	개인형퇴직인	년금제도(IRP)
十 世	확정급여형(DB)	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IRP	개인IRP
급여종류	일시	l금으로 개인IRP로 급여(이건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퇴직시	퇴직시	퇴직시	연금 : 만 55세 이상 및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 일시금 : 제한없음
급여액	직전3개월 평균임금× 근속기간 (퇴직금제도와 동일)	매년임금총액 × 1/	/12 + 운용손 익(±)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손익(±)
적립금운용주체	사용자(기업)	근로자(가입자)		가입자
추가납입	불가	가능		가능 (연간 1,200만원 이내)
중도인출	불가	가능		가능
적용세제	일시금 : 퇴직소득세 급여이전 : 과세이연		가납입금(소득공제분) : 퇴직소득세 : 과세이연	연금 : 연금소득세 일시금 : 퇴직 또는 이자 · 배당소득세

- * 추가납입금은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자산은 근로자(가입자)의 지시대로 운용되며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3 퇴직연금제도 운영사항



가.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아래 법령상 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가능 요건(법 시행령 제2조)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③ 근로자가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최근 5년 이내)
- ④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최근 5년 이내)
- ⑤ 기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항	목	담보제공	중도인출
적용	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담보 제공	1)~(4)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이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이내
한도	(5)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중도인출 신청시 가입자 안내사항

- 가입자의 중도인출 해당 법정사유 확인 및 각 사유별 필요 제출 서류 등의 절차 안내
- 중도인출 및 향후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 등 설명
- 적립금 중도인출시 기 운용중인 상품의 매도처리 등에 대한 설명

나. 지연이자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만 해당)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규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 기적으로 성실히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에 따라 법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정 지연이자율

- 납입기일 익일 ~ 퇴직 등 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까지 : 10%/년
- 퇴직 등 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후 기간 : 20%/년

4. 임금 및 퇴직급여



가.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급여 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근로에 대한 대가성, 2)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임금산정기간내)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급여

※다만,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함

퇴직급여 = 평균임금
$$\times$$
30일분 \times $\left\{ () 년 + \frac{() 일}{365} \right\}$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에서의 퇴직급여

퇴직급여 =
$$\sum$$
(연간임금총액 $\times \frac{1}{12}$) +운용손익

라. 임금산정시 포함 불포함 항목

- 성과급 : 기업의 이윤 또는 일정목표 달성 여부 등과 연계되어 그 결과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 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 연간 단위로 지급률이 설정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
- 식대/교통비 :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므로 미 포함
 - * 다만, 식대, 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 포함됨

5 퇴직급여 지급절차



가. 퇴직시 지급절차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시 다음 절차에 의해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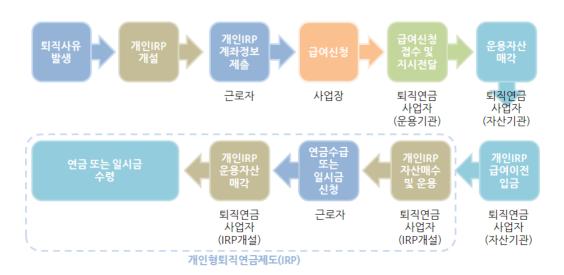
퇴직시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급여종류	형태	수급요건
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26	개인형IRP	•55세 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 개인형IRP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일시금은 근로자의 개인형IRP에 이전방식으로 지급되며, 법정사유(만 55세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불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의 적립금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2012. 7. 26 이후 퇴직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전된 퇴직 급여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내용

- 퇴직급여를 수령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신탁계좌(또는 요구불계좌) 개설 정보
- 법정외 퇴직금이 있는 경우 법정외퇴직금의 개인퇴직계좌 급여이전 여부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될 퇴직급여로 운용할 상품 및 그 투자비율
- 원천징수영수증, 과세이연명세서 등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이전시 효과

• 과세이연 혜택 : 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되면 해지 또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의 세금납부를 이연할 수 있어 운용자금이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효과 : 근로자의 경우 개인연금과 통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개인추가부담금 납입 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가능 : 퇴직금 또는 여유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면 연령조건, 수급기 간 조건 만족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급여이전 예외사유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단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 한도 내)
-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선택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퇴직금 및 개인추가부담금으로 정기예금, 수익증권(펀드) 등의 금 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상품 및 투자비율은 가입자가 직접 결정하며 그 운용결과는 가입자(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운용상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가입 금융기관과의 상담 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조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수급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가. 연금소득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연금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연금소득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 = 연금지급금액 × 5%(주민세 별도)

* 연금소득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10%의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Case 1: 연간 총연금액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종합과세 적용

연간 총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연금 수급시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은 예납적(선납) 원천징수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해 정산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있는 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Case 2 : 연간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연간 총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분리과세(연금지급액의 5.5%)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퇴직소득세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은 퇴직일시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연분연숭법^(주)을 적용하여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확정합니다.

(주)연분연승법 : 총소득을 연분(발생기간으로 나누어)하여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그 세금에 연승(다시 발생년수를 곱)하여 총세금을 계산하는 것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 : 퇴직일시금 × 40%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1년당 30만원~120만원

퇴직소득세율

• 과세표준금액 1200만원 이하 6%

• 과세표준금액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 과세표준금액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과세표준금액 8800만원 초과 35%

* 산출된 퇴직소득세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10%의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7.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 처리



가.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퇴직연금제도를 노사합의나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폐지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경우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은 일시금 또는 가입자의 개인 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되며, 해당 급여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퇴직연금제도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는 아래 2가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며 제도운용이 중단되더라도 근로자의 부담금 납부,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은 계속 수행됩니다.

중단 사유

- 일시적인 재정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자가 등록 취소 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린 경우

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및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사업자(기업)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제도 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자산, 부채관리 및 노후설계



가. 자산, 부채관리

인생의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무 사건들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하고 조절하는 자산, 부채관리가 필요합니다.



나. 평균적 생애설계시 고려사항

현재 우리 사회는 장수·고물가·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반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정년퇴직 이후의 삶이 길어졌습니다. 직장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5년~10년의 소득의 공백이 생기지만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그리고 부모 부양 등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노후설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구하고 은퇴를 위한 준비자금을 구해 둘의 은퇴시점 가치를 같게 만드는 투자수익률을 통해 추가투자방안을 마련합니다.

다. 노후 필요자금 산출

기본 정보 정리	배우자,자녀 현황/각각의 목표 정리/자산현황 등
필요자금분석	각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요자금분석
준비자금분석	목표 시련을 위해 현재 준비된 비자금파악 및 확보계획
부족/잉여 자금분석	차이분석 (준비자금 – 필요자금)
평가/대안마련	부족분에 대한 대책마련

Step 1. 기본정보정리

현재의 가족관계, 재무상태와 목표한 계획이나 중요한 목돈이 들어갈 상황에 대하여미리 정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

가족현황	연령	월수입
남편	38세	300만원
아내	34세	260만원
자녀(남)	7세	

재무상태	자산	금액(만원)	부채	금액(만원)
	현금자산	1,300	주택담보대출	3,000
	은퇴자산 (국민연금, 개인연금)	1,600	자동차 할부금	1,900
	부동산 및 자동차	28,000	부채총액	4,900
	자산총액	30,900	순자산 (자산총액-부채총액)	26,000

향후계획	항목	시검
	주택확장	5년 후
	자녀교육비(대학교)	12년 후
	노후자금	22년 후

Step 2. 필요자금분석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를 산정해 봅니다. 구체적인 목표별로 필요자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현재 가치의 금액과 함께 미래에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얼마가 필요할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계획	시점	예상금액	예상금액(현재가치)
주택확장	5년 후	11,800만원	1억
자녀교육비(대학교)	12년 후	7,500만원	5000만원
노후자금	22년 후	127,800만원	6억

Step 3. 준비자금 분석

현재 보유 중인 자산 중 특정한 재무목표를 위해 미리 용도를 정해 놓은 자금을 먼저 할당한 뒤,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자산을 배분합니다. 노후설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에 꼬리표를 달 듯 목표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	금액	계획
대출상환	3000만원	월 60만원씩 4년간 대출상환
주택확장	11,800만원	월 100만원씩 5년 적립식펀드(목표수익률 9%)
자녀교육비	7,500만원	월 40만원씩 정기적금
노후자금	127,800만원	연금보험 월 20만원(국민연금+개인연금)

Step 4. 부족/잉여자금 분석

계산된 준비자금에서 필요자금을 빼 봅니다. 전체의 과부족도 중요하지만 각 재무목표별로 과부족을 계산해 보고 필요하다면 목표별 자금의 재배분도 수행합니다.

Step 5. 평가/대안마련

목표나 자금 규모의 조정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준비자금과 필요 자금의 은퇴시점 가치를 같게 만드는 투자수익률을 통해 추가 투자금액을 마련합 니다.

9.7 타



가. 계약이전 처리절차



주요설명

- ①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변경 : 퇴직연금 규약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받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당없음)
- ② 계약이전 신청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 체결
- ③ 가입자 정보제공 및 적립금 이전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을 이전
- ④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새로운 퇴직연금관리기관이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개인추가부담금 납입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근로자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한 개인추가부담금은 개인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급여종류	수급요건
W 	•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시 •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상시)

중도인출 가능 요건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③ 근로자가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최근 5년 이내)
- ④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최근 5년 이내)
- ⑤ 기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HELP 교육자료에 수록된 내용이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추가문의는 가까운 퇴직연금 개설 금융기관 지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